

국내 M&A 활성화를 위한 방안

환경제도적 개선사항

지난 호까지 국내 M&A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률적 개선사항 및 회계·세무적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

이번호에는 마지막으로 국내 M&A의 환경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국내 M&A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제안을 마감하도록 하겠다.

M&A 주간사(중개인) 자격을 강화시켜야 한다.

자격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중개업자의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인 M&A거래로 대주주의 전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 M&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.

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경우처럼 주로 자격과 도덕성을 갖춘 투자은행 및 전문적인 M&A컨설팅 회사에 의해 M&A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.

또한 M&A 주간사(중개인)를 시장공시를 통해 밝힘으로써 M&A의 투명성 여부를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.

M&A관련 Financing 방법에 대한 교육강화 및 관련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.

자금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Financing 방법(Junk Bond 발행, LBO펀드, 사모 M&A펀드, Stock Swap, 기업 구조조정펀드 등)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다.

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은 물론 관련 규제의 완화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.

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제고가 필요하다.

근로기준법 제31조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)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중 '긴박한 경영상의 필요'라고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엄격한 정리해고 규정은 M&A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리해고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.



M&A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.

1997년 IMF시대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M&A를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아직도 상당히 부정적이다. 이에 대해 M&A가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의 일부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.

이처럼 국내 M&A 시장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. 이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때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보다 활성화된 M&A 시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. [KOV](#)

Deloitte & Touche

딜로이트투쉬 기업금융(Deloitte & Touche Corporate Finance)은 기업 금융 관련 자문서비스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 7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. 기업금융서비스(M&A, 외자유치, 민영화, IPO등)와 기업 구조조정서비스, 부동산서비스 및 거래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기업전반의 전략적인 재무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.